

8. 대구광역시 쪽방생활인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: 2022년 11월 18일
- 발 의 자 : 김재우 의원, 김원규 의원, 김지만 의원, 류종우 의원  
박소영 의원, 이영애 의원, 이재숙 의원, 전경원 의원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2일
- 상정일자 :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 
제6차 문화복지위원회(2022년 12월 16일) 원안 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재우 의원)

### □ 제안이유

- 본 제정조례안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최근 고물가에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쪽방생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쪽방생활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쪽방생활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쪽방생활인 ·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·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종사자의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(안 제5조 및 제6조)
- 쪽방생활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쪽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, 제10조 및 제11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규홍)

### □ 주요 검토사항

- 안 제2조는 쪽방생활인 ·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· 쪽방생활인 지원시설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쪽방생활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명시하였음.
- 안 제7조는 쪽방생활인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,
- 안 제8조,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쪽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쪽방생활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쪽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,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<sup>10)</sup>에서도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에 쪽방상담소만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음.
- 대구시에는 4개의 쪽방밀집지역이 있으며, 총 634명의 쪽방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대구시에서는 올해 쪽방생활인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사업 등 연간 7,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,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쪽방생활인의 생활안정, 권리증진 및 정서지원 등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해 보임.

〈쪽방생활인 현황〉

쪽방건물(동)	쪽방수(실)	쪽방생활인(명)	쪽방생활인 현황(명)			
			중구	동구	서구	북구
66	926	634	263	159	153	59

10) 제16조(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)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8. 12. 11.>

1. 노숙인일시보호시설: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
2. 노숙인자활시설: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·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3. 노숙인재활시설: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4. 노숙인요양시설: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5. 노숙인급식시설: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
6. 노숙인진료시설: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
7. 쪽방상담소: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·취업지원·생계지원,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8. 그 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② 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성별현황			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				주민등록상태			
							계	유	무	기타
계	남	여	계	수급	비수급	기타	634	596	10	28
634	575	59	634	360	248	24				

- 쪽방생활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동절기에 재해위험과 추위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용품 지원 및 안전점검 등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, 또한 이들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도 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겠음.
-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재개발·재건축으로 인해 쪽방생활인이 원치 않게 이주하게 되어 힘든 상황에 처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주거상담, 매입임대주택 지원 등 주거복지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.
- 쪽방생활인 복지 분야 정책 방향 설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해 설치 가능(임의규정)한 쪽방정책자문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토록하고 있어 자칫 우선 순위에 밀려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,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.
- 특히 쪽방생활인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근간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근거하여 정확한 현황을 바탕으로 종합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계획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**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**

**제9조(실태조사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·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. 28.>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에 관련 시설·법인·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신설 2015. 1. 28.>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·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. 28.>

- 아울러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밀착해 있는 쪽방생활인 지원시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,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음.

**<쪽방생활인 지원시설 현황>**

(단위 : 천원)

시설명	위 치	대표자	2021년 지원액	2022년 지원액	운영주체
계	3개소		572,060	574,777	
대구쪽방상담소	서구 문화로47길 13-3(평리동)	장민철	459,260	451,521	자원봉사 능력개발원
대구희망진료소 (무료진료소)	중구 국채보상로 531 (수동, 광병원 별관)	백순영 (공중보건과)	10,800	10,800	쪽방상담소 부설
행복나눔의집	중구 서성로16길 53 (대안동)	장민철	102,000	112,456	자원봉사 능력개발원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질의없음.	

#### 5. 토론요지

- 없음.

#### 6. 수정안 요지

- 없음.

#### 7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#### 8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.

##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.